#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37

발의연월일: 2022. 5. 9.

발 의 자:조경태·최춘식·이명수

김용판 · 조명희 · 하영제

백종헌 • 정동만 • 박성민

태영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이라함)을 임명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보다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정하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학내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신설 등).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임용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 ② 임용추천위원회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대학교육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대학교육기관의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용추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④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임용한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를 각각 제53조의3부터 제53조의6까지로하고,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 ① 제53조제2항에 따라 직접선거로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한다.
-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3(종전의 제53조의2)제6항 중 "제53조의4"를 "제53조의5"로

한다.

제53조의4(종전의 제53조의3) 중 "제53조의2"를 "제53조의3"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의2제2항에"를 "제53조의3제2항에"로 한다.

제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의2제2항에"를 "제53조의3 제2항에"로 한다.

제67조 중 "제53조의5까지"를 "제53조의6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u>① 각</u>
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	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
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	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
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다
	만,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육기관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
	하 "임용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u>&lt;신 설&gt;</u>	② 임용추천위원회는 해당 학교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대학교
	육기관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u>야 한다.</u>
<u> &lt;신 설&gt;</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
	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대
	학교육기관의 장의 임용추천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
	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	④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임
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용한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

③ (생 략)

<신 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3조의2(대학교육기관의 장 후 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제53조제2항에 따라 직접선거로 대학교육기관의 장 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 인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 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 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 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 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 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 제79조에 따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

의 임용) ①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 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 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 장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 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 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 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한 다.
-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교법인이 부담하 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 | 제53조의3(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 의 임용) ① ~ ⑤ (현행과 같 음)

6	
	제53조
<u>의5</u>	
	. – – – –

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 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 야 한다.

#### ⑦ ~ ① (생 략)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53조의4 · 제53조의5 (생략)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 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 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2. (생략)

④·⑤ (생 략)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3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
치) 제53조의3
<u>제53조의5</u> · <u>제53조의6</u> (현행 제53
조의4 및 제53조의5와 같음)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3조의3제2항
<u>에</u>
1. •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 ① (생략)
-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 자 또는 학교의 장(<u>제53조의2제</u> <u>2항에</u>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 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 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 1. ~ 5. (생략)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 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 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 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 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 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 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 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 6조의3제2항·제3항, 제66조의 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 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

(1 (1 0 ) ED)
②
<u>제53조의3제2</u>
<u> हो- जो</u>
<u>.</u>
1. ~ 5. (현행과 같음)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53조의6까지

① (혀해고 간으)

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